

무 급 전 입 자 입 금 지 급 세 칙

2011년 12월 23일 제정 2016년 1월 29일 개정 2017년 1월 18일 개정

현행안	개정안
제 1 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세칙은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위아지회 (이하 '지회') 무급전입자 임금지급 세칙이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 세칙은 규칙 제50조(신분보장)에 의거 무급전입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여 원활한 조합 활동을 보장 하기 위함이다. 제3조 (지급대상) 1. 지회장이 추천한 자 (단, 집행위원에 한함) 2. 조합 및 상급단체에 피임, 피선된 자 제4조 (심의기구) 1. 지회장이 추천한자는 집행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다. 2. 조합 및 상급단체 피임, 피선된 자는 대의원회의에서 심의 의결한다. 제5조 (지급시기 및 기간) 1. 본 세칙 제3조(지급대상)의 발생일로 부터 계산하여 조합원 과 동일하게 매월 임금 지급일에 지급하며 지급 기간은 사유가 소멸 된 날까지로 한다. 2. 급여지급 방법은 매월 제세공과금 등을 공제하고 급여통장으로 입금 한다 제6조 (기금의 설치와 운용) 무급전입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의 재원은 조합비2로 운영한다.	

현행안	개정안
제7조 (지급기준 및 방법) 1. 기본급은 조합원과 동일한 호봉표를 적용하며 호봉승급분 및 기본급인상분을 동일하게 반영하여 지급한다 2. 무급전임자에게 매달 통상임금 + <u>OT65hr</u> 지급한다. 3. 상여금은 상여금 지급기준에 따른다. 4. 집행위원 3명에 대하여 우선 배정한다. 5. 조합 및 상급단체 파견자의 임금은 1명 분에 한하여 지급한다. 6. 5항 복수의 인원에 대해서는 1명 분의 임금을 분할해서 지급한다. (단, 기 파견자의 임금은 인정한다.) 제8조 (급여정산 및 소급) 매월 급여 정산 후 소급분 발생시 익월급여에 반영한다. 제9조 (결근 및 휴직시 급여) 결근 및 휴직시 단협과 임금규정을 준용하여 조합원과 동일하게 처리한다. 제10조 (징계시 급여) 1 조합 규약에 의거 징계 확정시 해당자는 해당 기간만큼 임금을 지원하지 않는다. 2. 주휴.년.월차.상여금 등의 차감은 조합원과 동일하게 적용하며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제11조 (년, 월차) 무급전임 기간은 조합원 기준으로 년, 월차 수당을 지급한다. 제12조 (법적관계) 본 지회의 조합비2기금을 상대로 법적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제7조 (지급기준 및 방법) 2. 무급전임자에게 매달 통상임금 + <u>OT52hr</u> 지급한다.

현행안	개정안
부칙 제13조 (제정 및 개정) 본 세칙의 제정 및 개정의 결의는 총회 (대의원회의)에서 결의한다. 제14조 (통상관계) 세칙의 미비점 또는 정함이 없는 사항은 조합원과 동일하게 적용되는 임금규정을 준용하여 적용한다. 제15조 (시행) 이 세칙은 제정된 날로부터 적용한다.	